

# 상사신용조사규정

제 정 : 1996. 2.17

1차개정 : 1997. 9.20

2차개정 : 1998. 9.19

3차개정 : 1999. 2.10

4차개정 : 2004.11.29

5차개정 : 2007. 7. 5

6차개정 : 2008. 8.29

7차개정 : 2010. 7. 6

**제 1 조(목적)** 이 규정은 업무방법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사신용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(적용범위)** 상사신용조사에 관하여 무역보험법, 동시행령, 동시행규칙 및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**제 3 조(조사대상)** 상사신용조사(이하 "신용조사"라 한다)는 국내기업, 국외기업 및 기타 업무에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**제 4 조(조사 신청)** 신용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신용조사신청서를 받는다. 다만, 재조사와 신용조사 담당 부서장(조사, 인수, 보상채권 관련 담당 부서장 및 국내외지사장(주재원)을 포함하며, 이하 "조사담당 부서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 5 조(조사의 구분)** ① 신용조사는 일반조사와 특별조사로 구분한다.  
② 일반조사는 제3조의 조사대상에 대하여 신용조사기관 등이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조사, 제공하는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조사를 말하며, 특별조사는 일반조사에 의한 개괄적인 정보 이외에 특정사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.

**제 6 조(조사방법)** ① 국외기업 신용조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.  
1. 신용조사기관을 통한 조사  
2. 국외지사(출장소, 사무소, 주재원을 포함한다)를 통한 조사  
3. 재외공관 및 기타 관계기관을 통한 조사  
4. 출장에 의한 조사  
5. 공신력 있는 간행물에 의한 조사  
6. 신청자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한 조사  
7. 기타 신용조사 담당 부서장이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 조사  
② 국내기업 신용조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.  
1. 신용조사기관을 통한 조사  
2. 국내지사(출장소, 사무소를 포함한다)를 통한 조사  
3. 금융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을 통한 조사  
4. 출장에 의한 조사  
5. 신청자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한 조사  
6. 공신력 있는 간행물에 의한 조사  
7. 기타 조사담당 부서장이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 조사

③기타 업무에 필요한 자에 대한 신용조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을 준용한다.

**제 7 조(신용평가자료의 인정기준)** 신용평가지 이용자료는 제6조의 조사방법에 의해 입수된 최신자료로 한다.

**제 8 조(신용등급평가)** 보험(보증을 포함한다)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등급을 평가한다.

**제 9 조(신용정보자료 제공)** 국내기업등으로부터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신청받은 경우 신용정보담당이사(이하 "담당이사"라 함)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한다.

**제10조(신용등급)** 신용등급은 신용도의 우열에 따라 A급, B급, C급, D급, E급, F급, G급 및 R급으로 구분한다.

**제11조(신용등급의 유효기간)** ①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은 최근 평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 다만, 최근 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G급 및 R급의 경우에는 등급책정 사유가 소멸되어 이전등급을 재부여하거나 재평가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**제12조(재조사)**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여부에 불구하고 재조사를 할 수 있다.

1. 조사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신용조사신청이 있는 경우

**제13조(세부사항 및 위임)**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"상사신용조사요령"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부 칙(제 정)

**제 1 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1996. 4. 1부터 시행한다.

**제 2 조(경과조치)** ①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평가된 수출자, 수입자 신용등급은 이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기준으로 이 규정에 의한 등급으로 조정된다.

② 제1항에 의하여 조정된 등급의 유효기간은 조정전 평가일로부터 기산한다.

### 부 칙(1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. 9. 20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)

이 규정은 1998. 9. .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3)

이 규정은 1999. . .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4)

이 규정은 2004.11.29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5)

이 규정은 2007. 7. 5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6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8. 9. 16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관련규정의 폐지)** "상사신용조사요강"은 이 규정 시행일에 폐지한다.

### 부 칙(7)

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